

# 대외채권추심대행 업무처리규정

제 정 : 2004. 1. 2

1차개정 : 2005.10.18

2차개정 : 2006. 6.16

3차개정 : 2007.11.29

4차개정 : 2010. 3.26

5차개정 : 2010. 7. 6

6차개정 : 2021. 3.31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무역보험법 제53조(업무) 제3항에 따라 수출(수출보험 계약이 체결된 수출을 제외함)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(이하 "채권자"라 함)의 해외미수채권(이하 "채권"이라 함)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채권의 회수업무는 무역보험 관계법규(업무방법서를 포함함. 이하 같음)와 대외채권추심대행 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되 무역보험 관계법규와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"수수료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착수금 : 채권추심기관이 추심 착수 전에 요청하는 수수료로서, 추심 실패 시에 채권추심기관이 요구하는 실패수수료를 포함함
2. 성공수수료 : 약관에서 규정한 회수금에 따라 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
3. 가산수수료 : 채권추심기관을 통한 회수 시 제2호에 따라 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성공수수료 이외에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

② 이 규정에서 "회수금"이란 채권추심대행계약이 체결된 시점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채권추심대행계약의 체결

제 4 조(관련서류의 검토) ① 채권자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채권추심대행계약

의 체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하자 여부를 검토한다.

②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서류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**5 조(채권의 분류)** 수입 채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특성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고 관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 **6 조(추심활동의 착수)** 약관에서 정한 채권추심 대행계약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추심활동에 착수한다.

### 제 3 장 추심업무의 수행

제 **7 조(추심 주체)** ① 채권의 건별 추심주체를 본사, 국외지사(주재원을 포함함, 이하 같음), 공사와 채권추심 업무협약이 체결된 채권추심기관(이하 "채권추심기관"이라 함)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.

② 채권추심 주체의 결정 및 진행 주체별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**8 조(채권자와의 사전동의)** 채권추심 진행과정에서 채무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등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변경이 있거나, 채권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## 제 4 장 수수료 및 회수금의 처리 등

제 **9 조 (수수료)** ① 착수금은 채권추심기관 요구금액에 송금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.

② 공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 성공수수료는 회수금액에 공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.

③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회수한 경우 수수료는 채권추심기관 성공수수료와 공사의 가산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.

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분류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공사의 성공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채권추심 업무의 활성화,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공수수료와 가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0 조(회수금의 처리)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약관 제11조에 따라 회수금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구한다.

제 11 조(부가세 부과)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는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제 5 장 추심활동의 종결 등

제 12 조(추심대행계약의 해지) 약관에 따라 채권추심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한다.

제 13 조(회수보상금 지급) ① 본사 또는 국외지사가 추심주체가 되어 진행한 건 중에서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회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권회수에 기여한 경우에도 회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회수보상금 지급대상, 지급율 등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외채권추심대행 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6 장 회수불능채권의 확인

제 14 조(회수불능채권 확인) ① 채권자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불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심사 등을 통해 회수불능채권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.

② 회수불능채권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7 장 보 칙

제 15 조(업무협약) ①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하여 해외 채권추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채권추심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,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16 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부 칙 (제정)

이 규정은 2004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1)

이 규정은 2005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)

이 규정은 2006년 6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3)

이 규정은 2007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4)

이 규정은 2010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5)

이 규정은 2010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6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